

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

1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11조의3(보수교육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)
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(이하“보수교육”이라 한다)을 면제한다.

-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(12.31.)까지 면제
 - 2022년 합격자 → 23년, 24년 면제 →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 - 2023년 합격자 → 24년, 25년 면제 →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 - 2024년 합격자 → 25년, 26년 면제 →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- “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
 - … 「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」
 - ※ ‘요양보호사 자격증’에는 자격증 ‘교부년도’ 또는 신규발급 경우, ‘자격 취득일’만 확인되어 ‘합격 확인’ 별도 증빙 필요함
 - ※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

2. “합격확인서” 발급방법(합격일 또는 합격연도 확인)

…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이하 국시원)의 공식 답변

- 국시원 로그인 → 면허·자격·증명서 → 증명서 발급신청 → 합격확인서 발급 (유료 1,000원/1통) 열람용(확인)
 - 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응시이력 확인 가능
 - 단체(교육기관)로 응시원서 접수한 경우,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‘과거시험 정보 찾기’를 통해 접수이력 연동 후 발급가능
- 인터넷 발급 어려울 경우, 국시원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이용
 - ※ 국시원 고객센터 : 1544-4244
- 국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합격 문자(또는 열람자료)도 면제자 증빙자료로 인정함 (문자 캡처 -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출)
 - ※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발급 → 2023.1.1. 이후 국시원에서 수행